



고용노동부

#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

1. 관련: 산업보건과-664(2020.2.11)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」
2. 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4판('20.2.11)」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, 사업장 지도·안내(홍보)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개요	주요 변경 내용	비고
명칭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 19(COVID-19)로 명칭 변경	사업장 대응지침 전체
사업장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	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5쪽
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시	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수정·보완	사업장 대응지침 8쪽
생활수칙 안내문	자가격리대상자·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	사업장 대응지침 14-15쪽
참고지침(붙임6)	질병관리본부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48-53쪽

※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보라색 수정내용 참조

붙임: 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5판).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지방관서(산재예방지도과)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전문위원 **최선미** 보건사무관 **이종걸** 산업보건과장 **김동욱** 전결 2020. 2. 17.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과-741 (2020. 2. 17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/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  
세종정부청사 11동

전화번호 044-202-7739 팩스번호 044-202-8093 / [mimi17@korea.kr](mailto:mimi17@korea.kr) / 비공개(5)

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